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비영리법인 총회 의사록 공증,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0.12.15 (화) 오후 2시 - 4시
(온라인 토론회)

(사)시민 · 서울시NPO지원센터 · (재)동천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1. 토론회 취지 및 배경

- 올해 3월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의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기존 대면방식의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을 위해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함에 대해 발표하였음.
- 이러한 변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이사회 또는 총회 의사록 공증에 대한 실무적인 애로사항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온라인 총회의사록에 대한 관할 기관의 해석 차이를 비롯하여 비영리법인의 공증에 대한 실무적·경제적 부담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인감증명서 제출 등)에 대한 부담 등이 높음.
-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공증인법' 제66조의 2(법인의사록의 인증)와 '공증인법시행령' 제37조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 따라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자격이 됨.¹⁾
- 공증인법 및 동시행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별로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 대한 제도 이해가 없거나 추천 기준이 불명확함²⁾**에 따라 공법인 및 특정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다수의 비영리법인들은 제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제도에 따른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 대한 기준안 논의 등을 위한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개요

- 일 시 : 2020년 12월 15일(화) 오후 2시 - 4시
- 진행방식 : 온라인 줌 회의
- 대 상 : 비영리법인(총회의사록 공증 관련 이슈가 있거나 관심있는 조직)
- 공동주최 : 사단법인 시민·서울시NPO지원센터·재단법인 동천

1) 공증인법시행령 제37조3에 따라 법무부 고시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864개(2020.10.22. 기준. 중앙 및 지방 관계의 법인 등도 개별적으로 제외대상 법인으로 포함된 개수)

2) 주요기준 : 비영리·공법인 여부, 설립목적 및 사업의 공익성, 주무관청 감독 및 의결절차와 내용의 진실성 3가지 기준 항목으로 주무관청 자체판단 기준 마련(자체판단 기준 항목 주무관청별 서식 동일)

3. 프로그램(안)

사회 : 김유리(서울시NPO지원센터 팀장)

시간	구분	내용	발표자
14:00-14:05 (5')	소개	■ 토론회 취지 및 참석자 소개	
14:05-14:25 (20')	발제	■ 공증실무와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고찰	양승원(공증인양승원사무소 변호사 /대한공증인협회 이사)
14:25-14:35 (10')	토론	■ 토론1.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외 사례 : 비영리법인 사례	심전호(충남시민재단 팀장)
14:35-14:45 (10')		■ 토론2.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외 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사례	민앵(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상임이사)
14:45-14:55 (10')		■ 토론3. 비영리법인의사록 인증의 실무적 한계 및 어려움	신권화정(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14:55-15:05 (10')		■ 토론4.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안	송시현(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변호사)
15:05-15:30 (25')	종합토론 : 발제자 및 토론자		청중 질의응답

목차

안 내	■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1
	■ 공증실무와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고찰	4
발 제	■ 의사록 공증 해야만 할까요? 양승원 (공증인양승원사무소 변호사/대한공증인협회 이사)	47
	■ 토론1.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외 사례 : 비영리법인 사례 심전호 (충남시민재단 팀장)	55
토 론	■ 토론2.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외 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사례 민앵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60
	■ 토론3. 비영리법인의사록 인증의 실무적 한계 및 어려움 신권화정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68
	■ 토론4.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안 송시현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변호사)	76

발제. 공증실무와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고찰³⁾

 양승원⁴⁾ 공증인양승원사무소 변호사/대한공증인협회 이사

3) 이 발제문 관련 주장들은 제 사건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나 대한공증인협회의 공식 의견이 전혀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록의 의사록인증 관련 서류의 경우 공증사무소마다 실무상 사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공증인 양승원 사무소 대표, 대한공증인협회 이사, 법무부 임명 공증인, 공증전문 변호사

목 차

I. 공증 개론	6
1. 공증 일반론	6
2. 의사록 공증 일반론	7
II. 비영리법인 의사록 공증	9
1. 의사록 작성의무자	9
2. 의사록에 서명이나 기명날인할 자	9
3. 의사록의 기재사항	10
4. 의사록 공증 방법	11
5. 전자공증	15
6. 화상공증	17
III. 의사록인증 제외	19
1. 의 의	19
2. 연 혁	19
3. 현 황	21
4. 요 건	21
IV. 비영리법인 총회 의사록 공증제도 개선안	22
1. 개선의 필요성	22
2. 개선안	22
부록 1. 사단법인 총회 의사록 샘플(27쪽)	
부록 2. 공증촉탁서 양식(28쪽)	
부록 3. 의사록 공증 구비서류 목록(29쪽)	
부록 4. 의사록 및 공증 구비서류 작성 참고사항(30쪽)	
부록 5. 확인서 양식(31쪽)	
부록 6. 사단법인 회원명부 양식(32쪽)	
부록 7. 협동조합 조합원명부 양식(33쪽)	
부록 8. 공증 위임장 양식(34쪽)	
부록 9. 진술서 양식(35쪽)	
부록 10.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자료(36쪽)	
부록 11. 서울시의 공익법인 및 민법상 비영리법인 총회 결의 관련 안내문(2020.3.3.자)(37쪽)	
부록 12. 국무총리실의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 소집 예로사항 해소방안 관련(39쪽)	
부록 13. 화상공증 가능 전국 공증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41쪽)	
부록 14. 법무부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법인 고시(2020.10.22.)(42쪽)	

I. 공증 개론

1. 공증 일반론

1) 공증의 개념

공증(公證)은 ‘공적(公的)으로 증명한다’는 뜻.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법률관계나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문서에 대한 **인증**의 방법으로 증명한다.

그 기원은 로마시대부터 연유, 현재 제도는 중세 이탈리아에서 비롯,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경국대전 호전(戶典) 매매한조(賣買限條)에 “전답이나 가옥·노비 등을 매매하였을 때에는 100일 내에 관(官)에 보고하고 입안(立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보인다.

2) 공증의 효력

① 분쟁 예방(증거 확보, 권리행사 쉽게), ② 진정 문서로 추정(증거능력 인정), ③ 신속한 강제집행(집행공증만), ④ 분실 대비(서류 보존기간 - 공정증서 원본 10년, 의사록 인증서, 사문서 인증서 사본 3년)

3) 공증의 종류

① 공정증서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공정증서라고 한다.

② 사서증서 인증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작성자가 사서증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이다.

③ 전자문서의 인증

전자문서에 본인이 전자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이다.

④ 기타

확정일자인의 날인, 거절증서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 재산목록의 작성 등

4) 공증인

공증인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므로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본다.

① 임명공증인 :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임명공증인’(공증 전업, 변호사업 휴업)

② 인가공증인 :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공증담당변호사는 변호사 겸업)

※ 임명공증인(공증 전업)이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변호사 겸업)의 자격 -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한 사람(법률전문가)

2. 의사록 공증 일반론

1) 의미

-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 **의사록**은 법인 내부 기관으로서 회의체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어떤 사항을 결의하였는지 즉, 의사(議事)에 관하여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회의의 경과 및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문서인 바, 의사과정을 그대로 기록한 속기록 등과는 다르다.

보통 의사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민법 제76조, 상법 제373조), **회의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 또 의사록은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쳐야만 의사록으로서 성립하며, 이를 아직 마치지 않았다면 미완성 상태의 의사록에 불과하여 인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의사록 공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또는 이사회, 이하 통칭할 때는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확인하여 공증하는 것. 의사록 인증은 공증인이 의사록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사람이 의사록을 작성하였는지와 함께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한지를 확인하여 증명해주는 것을 말한다.

2) 의사록 인증은 왜 하는가?

의사록 인증 제도는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으로 하여금 법인의 의사결정과정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법인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그 결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의사록 인증을 통해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허위 또는 위조된 의사록에 의한 부실등기를 방지하여, 정확한 법인 정보의 공시를 통하여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고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5) 의사록에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협동조합기 본법상 협동조합의 조합원총회 의사록뿐만 아니라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의사록, 그 밖에도 각종 특별법에 의한 법인의 기관에 관한 의사록이 있다. 이하에서는 본 세미나의 주제와 관련된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의사록과 협동조합의 조합원총회 의사록을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3) 의사록은 무조건 공증해야 하나?

공증인법 66조의2 1항은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의사록이 제출될 경우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사록의 내용이 법인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임원퇴직금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처럼 법인등기사항은 아니지만 의결의 중요성을 감안하거나 후일의 증거로 삼기 위하여 인증을 받아두는 경우도 있다.

4) 의사록 인증의 효과

-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1992년 대법원 판결).
- 의사록은 결의에 관한 강력한 증거방법으로, 회의의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록에 의해서만 증명되어야 한다(2010년 대법원 판결).
- 의사록이 결의에 관한 유일한 증거방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증명력을 다투는 쪽에서는 이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2011년 대법원 판결).
- 등기관은 반대의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다른 자료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주주총회의사록 등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으며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등기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상업선례 1-72).

II. 비영리법인 의사록 공증

1. 의사록 작성의무자

작성의무자가 누구냐에 관하여 의장이라는 견해와 법인의 대표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통상 의장과 법인의 대표가 서로 동일한 경우에는 작성의무자를 따질 실익이 없으나, 법인 대표자의 유고(사망, 해외 출장, 입원, 직무정지가처분 등)시 회의 현장에서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의장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으면 의사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작성의무자를 의장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2 의사록에 서명이나 기명날인할 자

1) 의사록 상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하 통칭할 때는 ‘기명날인 등’)할 사람은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정해진다. 의장 외에도 의사록에 기명날인 등을 할 사람을 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사단법인 사원총회 의사록⁶⁾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민법 제76조 제2항), 사단(재단)법인 이사회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협동조합 조합원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 조합원(협동조합기본법 제30조 제2항), 협동조합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정관)에 의한 기명날인 등을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상법 제373조 제2항), 이사회 의사록은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391조의3 제2항).

2) 등기실무에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면 비록 인증을 받았어도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의사록에 날인하는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하였거나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어도 무방하다(즉 막도장도 가능, 상업선례 1-384).

3) 법정(法定) 서명기명날인 등을 한 자 외에 총회 등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 중에서 추가로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사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도 의사록에 기재될 필요가 있다.

4) 그렇다면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고 회의가 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하였음에도 의사록을 작성하기 전에 의장에게 유고가 발생한 경우나 의장이 의도적으로 의사록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작성할 수 없는가? 가령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 후 사망하거나 의장이 어떤 의도나 사정으로 의사록에 기명날인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의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까지 기재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음

6) 민법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총회의 의사록에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록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서명을 기명날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민법이 기명날인만 인정하는 것은 단지 서명을 기명날인과 동일시하는 시대의 조류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개정 전이라고 해도 사단법인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대신 서명하였다고 해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남상우, 의사록의 인증방법에 관한 고찰, 대한공증인협회, 공증과 신뢰, 2015(통권 제8호), 10면}

의장 대신 법인의 대표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의장 외의 자로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할 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의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정이 소명되어야 적법한 의사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3. 의사록의 기재사항⁷⁾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다(민법 제76조 제2항,⁸⁾ 상법 제373조 제2항).

의사(議事)의 경과는 회의체에서 어떤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통하여 일정한 의사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 즉, 개회, 보고, 의안설명, 토의의 요지, 표결의 방법, 폐회선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사의 경과에 대하여는 그 요령(要領) 즉,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골자나 줄거리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하면 되고 속기록과 같이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의사의 결과란 의안에 대한 표결의 결과, 즉 법인의 일정한 사항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말한다. 어떤 의안에 관하여 가결되었다 또는 부결되었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가결된 경우 그것이 만장일치로 되었는지 아니면 찬반으로 나뉘어진 경우에는 의안이 보통결의사항 또는 특별결의사항인가에 따라 그 정족수 이상의 찬성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그 밖에도 회의의 명칭, 회의 개최일시와 개최장소, 개회 시간, 성원보고, 의장의 개회 선언, 의안의 제안이유 및 그것에 대한 질의응답, 토론 및 의견요지, 결의의 성립여부에 관한 내용, 결의의 내용,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가령 총 직원 수와 출석직원 수, 찬성 직원 수), 의장의 폐회 선언, 폐회 시각, 작성 연월일 등은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서 당연히 의사록에 기재될 사항이다.

3) 의사록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이사회 감사 등이 출석한 경우에는 의사록에 그가 출석한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4) 해당 결의를 통하여 새로 선임되는 자가 의결장소에 참석하였다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한 그 사항도 의사록에 기재할 수 있다(기재 예 : 신임이사 000(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7) **부록 1. 의사록 양식** 참조.

8) 민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민법 제76조 제2항에서는 ‘의사의 경과, 요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요령(要領)은 중요한 사항이라는 뜻에 불과하므로 ‘경과요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즈음은 ‘의사의 경과요령’ 대신 ‘의사의 진행상황’이라는 말을 사용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30조 제2항).

5) 소집통지절차는 통상 의사록에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소집통지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공증인은 소집통지서를 요구한다.

6) 소수주주의 청구로 소집되거나 법원의 소집허가에 따라 소집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고 후일 이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 사항도 넓은 의미에서 의사록, 경과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의사록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4. 의사록 공증 방법

1) 의사록 인증시 공증인이 확인하는 사항

- 의사록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은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한다.

첫째 의사록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는가?

둘째 의사록에 기재된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는가?

- 첫 번째 사항에 관해서는 공증인이 의사록 상의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로부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다.

- 두 번째 사항에 관해서는 공증인법 66조의2 3항에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공증인은 ①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검사하거나(참석인증), ②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해당 의결에 관하여 진술을 듣는 방법(청문인증)으로 의결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한다.

- 공증인은 위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증 신청인(촉탁인)이 제출하는 의사록 원본 2통, 진술서, 확인서, 사원명부(조합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공증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사원(조합원) 인감증명서, 소집통지서 등을 상호 대조하며 검토한다.

2) 의사록인증을 받으려면 누가 공증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의사록 인증의 신청인(촉탁인)⁹⁾은 인증의 종류가 참석인증인지 청문인증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① 참석인증

-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 -> 3쪽 II.1.2)항 참조

9) 공증사무소에 비치된 **공증촉탁서(부록 3. 양식 참조)**의 촉탁인을 말한다. ‘공증촉탁’의 뜻은 ‘공증신청’이다. 의사록 인증의 촉탁인은 일반적으로 공증인에게 공증을 청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② 청문인증

-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 -> 3쪽 II.1.2)항 참조
- 해당 의결을 한 사람 중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사람(참석인증과 다른 점)

만약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할 사람들 중 일부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사람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보충하고 그들의 인증신청도 받아야 한다.

3) 의사록 인증시 회의의 소집절차에 관해서도 심사하는가?

공증인은 법률을 위반하거나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공증인법 25조) 원칙적으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해진 소집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회의의 의사록에 관하여 인증을 거부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공증인은 소집절차 준수여부에 관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보통 법인의 대표자로 하여금 소집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정도로 소집절차에 관한 심사를 갈음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의 소집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공증인으로서 소집에 관한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실제 소집통지는 법률이나 정관에 정해진 기한내에 제대로 발송되었는지, 소집통지서상에 기재된 의안이나 요령이 실제 의사록상의 의안 및 요령과 일치하는지 등을 엄밀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회의의 개최를 알리는 소집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회의의 소집절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 소집통지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해진 기한내에 의결권을 가진 모든 주주에게 통지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인 의사록 인증사무처리지침에서는 법인 대표로 하여금 공증인에게 소집일시, 소집통지 발송일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확인서 상의 소집통지 발송일을 기재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해진 기한 이전의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민법 사단법인 사원총회 : 1주전까지 소집통지(민법 제71조)¹⁰⁾
- 협동조합 조합원총회, 대의원총회 : 7일전까지.
- 협동조합 창립총회 : 7일전까지

10)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 의사록 인증을 받으려면 의사록을 몇 통 제출해야 하나?

의사록의 인증을 받으려면 의사록을 원본으로 2통 제출하여야 한다. 의사록 1통은 공증인사무소의 보관용으로 필요하며, 다른 1통은 인증을 부여하여 촉탁인에게 내어드리는 용도로 필요하다. 공증인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의사록 원본에 근거하여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의사록의 열람을 구하거나 등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6) 의사록을 인증받을 때 법인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

청문인증의 경우 ‘법인의사록 인증사무지침’에 의하면 법인인감증명서는 첨부서류 중 ‘사원명부(조합원명부)’나 ‘진술서’, ‘확인서’가 사단법인(협동조합) 대표나 소집권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파악하는데 중요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지침에 의하면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도 촉탁인에 포함되며 보통 법인 대표는 의사록상 필요적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자라 할 것이므로 그 촉탁의사 확인을 위해서도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은 필수적이다.

7) 인증시 기타 유의할 점

의사록 인증시 제출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열람용’은 현재 법인등기 신청중인 경우에도 출력되므로 법인의 변경된 등기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관사본은 반드시 현재 사용중인 최신정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정관사본 가운데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대조했을 때 법인명칭, 소재지, 목적사항, 출자구좌수 등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과거에 정관이 변경되었지만 최신정관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의사록 인증의 거절사유가 될 수도 있다.

정관 변경 사항(법인명칭, 소재지 등)이 안건으로 포함된 의사록 인증의 경우 현재 사용중인 정관인 ‘변경전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후 정관(변경할 정관)을 잘못 가져와서 다시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8)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서면결의로써 사원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경우 의사록 작성을 해야 하는가? 만일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 그 의사록이 등기할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법인 등기서류로 첨부하기 전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통상 ‘소규모 회사’라 칭한다)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5항). 소규모회사의 주주총회 개최비용과 번거로움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2009. 5.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고,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서면결의에 의한 경우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가? 법무부는 주식회사의 경우 서면결의는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것이지만, 총회로 결의할 사항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주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시되어야 하고, 안전에 대한 결정 과정 등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히 기록될 필요가 있으며, 서면결의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서면결의시에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록 작성제도는 어떤 회의체의 의사결정과정과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고, 서면결의제도는 소규모 회사나 비영리법인의 총회 개최에 따른 비용과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제도이므로 양 제도는 그 취지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회사나 비영리법인에서 위 법무부의 주식회사 서면결의에 관한 주장처럼 오히려 의사록을 더욱 제대로 작성할 필요성도 있다.

◆ 참고

<부록 11. 서울시의 공익법인 및 민법상 비영리법인 총회 결의 관련 안내문(2020.3.3.자)> <부록 12. 국무총리실의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관련 보도자료>(2020.3.5.자)

9) 의사록 공증 필요서류 - 부록 참조

- ㉔ 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 원본 2부
- ㉕ 확인서(“확인인”난에 법인명, 대표자 이름, 법인주소 기재, 법인도장 날인)
- ㉖ 진술서(“진술인”난에 대리인 이름, 주소 기재, 대리인 도장 날인)
- ㉗ 회원명부(사단법인), 조합원명부(협동조합)
- 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㉙ 정관 사본(표지 원본대조필 기재후 법인인감 날인)
- ㉚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개인 인감도장 날인)
- ㉛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 ㉜ 개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 ㉝ 소집통지서(총회 1주일 전까지 발송, 소집공고문 또는 전자우편 소집통지서 등)
- ㉞ 창립총회의 경우 주무관청의 설립승인서(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

5. 전자공증

1) 개념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편의상 전자공증이라 함)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의 면전에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거나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공증인이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 5 제1항). 즉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사인이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부여한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이다.

2) 공증 절차

① 전자문서의 인증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촉탁할 때에는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한 후, 인증을 받으려는 문서의 명칭, 촉탁인의 인적사항, 그 밖에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지정공증인을 선택하여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전자공증규칙 제6조 제1항). 또한 전자공증시스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받을 전자문서를 전자문서의 표준형식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전자공증규칙 제6조 제1항).

지정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한 사실이나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확인하게 한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66조의5 제1항 제1호, 제2호).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은 종이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사실을 지정공증인이 인증하여 주는 것이다(공증인법 제66조의6).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문서의 명칭, 촉탁인의 인적사항, 그 밖에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지정공증인을 선택하여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전자공증규칙 제7조 제1항, 제6조 제1항). 물론 이러한 절차는 지정공증인 사무소에 나가서 해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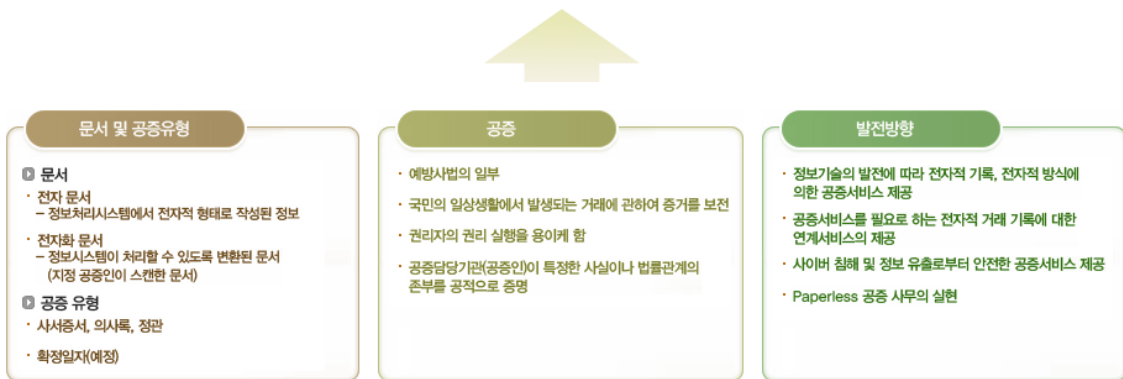
지정공증인은 촉탁인이 제시한 전자화대상문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야 한다(전자공증규칙 제11조 제1항 후문). 지정공증인은 인증을 완료한 전자문서를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등록된 그 전자문서를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촉탁인에게 내어 준다(전자공증규칙 제11조 제3항, 제8조 제2항, 3항).

1. 전자공증시스템 Vision

전자공증시스템은 정보화 시대의 선진 공증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신뢰받는 온라인 공증 서비스 제공 및 공증활용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

‘정보화 시대의 선진 공증 서비스 구현’

전자공증시스템은 최신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신뢰받는 온라인 기반의 공증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공증을 요구하는 공공민원, 사적거래 등의 **공증활용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
전자공증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확대를 통해 전자공증의 신뢰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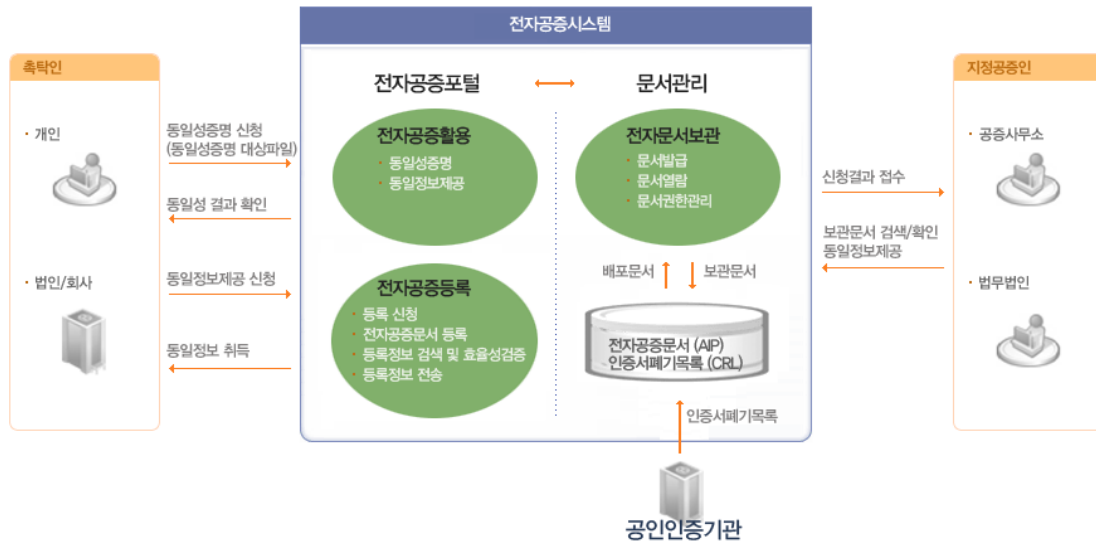
2. 전자공증 서비스 제공

축약인이 전자 서명한 문서를 공증 신청하여, 면전확인 과정을 거친 후 지정공증인에 의하여 공증이 진행됨



3. 전자공증문서 보관서비스 제공

전자공증문서는 보관 신청시 표준화된 전자문서형식에 따라 변환되어 장기보존되며, 인증받은 동일정보제공 및 동일성 증명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6. 화상공증

1) 개념

컴퓨터 웹캠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공증인을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문서 인증(2018. 6. 20. 시행).

2) 도입 배경

법무부는 2010년부터 전자문서에도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그 대상이 전자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에 공증을 받을 때처럼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해서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화상통화로 공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8년 도에 도입되었다.

3) 화상공증의 장점

① 국민 편익 증진

-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편리하게 공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공증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법인의사록 인증 시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인증 받은 파일을 첨부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신청의 전(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등기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

-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교통비용, 시간 등)을 대폭 절감된다. 공증 받은 전자문서는 전자공증시스템 서버에 저장되므로 공증서류 보관을 위해 공증사무소가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한다.

③ 공증 신뢰성 제고

4) 화상공증 절차



5) 화상공증을 하기 위한 준비사항 또는 주의사항

- ① 공인인증서
- ②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③ PC의 지역설정을 대한민국, 언어는 한글로 설정 후 재부팅
- ④ PC에서 화상공증 전에 본인확인(공인인증서)
- ⑤ 모바일앱을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 ⑥ 화상공증은 모바일앱 또는 PC에서 가능
- ⑦ 네트워크 속도가 저속일 경우 화상공증 진행이 되지 않음
화상공증을 연결했을 때 화면이 멈추거나 정지영상이 계속 나오면
네트워크 속도가 원활한 환경에서 진행해야 함
- ⑧ 현재 개발된 화상공증은 국내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됨

Ⅲ. 의사록인증 제외

1. 의의

의사록인증 대상 법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인이 의사록 인증의 대상(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영리법인(예: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협동조합) 불문. 단 의사록 인증제외 법인은 의사록인증이 면제됨(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의사록 인증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한국 고유의 인증제도이다. 이는 1970. 12. 31.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 분쟁사건 처리 특례법¹¹⁾이 제정되면서 변호사 겸업 공증인 제도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 등과 함께 도입되었다.

의사록 인증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안된 1972. 12. 19.자로 구 간이절차특례법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여 단서를 신설하여 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를 정하였다.

2. 연혁

1) 1970. 12. 31. 구 간이절차특례법 제정

제3조 (법인등기) ①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결의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1972. 12. 19. 구 간이절차특례법 일부개정

구 간이절차특례법 제3조 ①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사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공증인이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내용을 검사하거나 당해 의결을 한 자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그 촉탁인으로부터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자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신설 1972. 12. 19.>

11)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 분쟁사건 처리 특례법은 현재는 폐지된 법률이다. 이하 구 간이절차특례법이라고 약칭한다.

3) 1985. 9. 14. 공증인법 개정(공증인법 제66조의 2 신설)

공증인법 제66조의 2 ①항 (직전의 구 간이절차특례법 제3조 제1항과 동일)

- 구 간이절차특례법은 1985년 폐지되어 공증과 관련된 규정은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에서 규율하고, 그 중 의사록 인증에 관한 규정은 공증인법 제66조의 2를 신설하여 옮겨 규정하면서 일구 자구를 수정하였다.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2009. 5. 28. 공증인법 개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8.>

5) 2017. 12. 12. 공증인법 일부개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8., 2017. 12. 12.>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2.>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2.>

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12.>

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1항·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2. 6., 2017. 12. 12.>

3. 현황 - 최근 3개년(2018~2020.10.22.현재)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고시 현황

- 2020. 10. 22.자 고시 : 104개 추가 지정(761~864번) : 구체적 법인 명칭은 부록 참조
- 2020. 7. 23.자 고시 : 27개 추가 지정(734~760번)
- 2020. 3. 13.자 고시 : 21개 추가 지정(713~733번)

- 2019. 12. 24.자 고시 : 2개 추가 지정(711~712번)
- 2019. 12. 02.자 고시 : 11개 추가 지정(700~710번)
- 2019. 9. 17.자 고시 : 22개 추가 지정(678~699번)
- 2019. 6. 12.자 고시 : 28개 추가 지정(650~677번)
- 2019. 2. 27.자 고시 : 30개 추가 지정(620~649번)

- 2018. 12. 28.자 고시 : 14개 추가 지정(606~619번)
- 2018. 7. 31.자 고시 : 2개 추가 지정(604~605번)
- 2018. 7. 19.자 고시 : 78개 추가 지정(526~603번)
- 2018. 4. 4.자 고시 : 1개 추가 지정(525번)
- 2018. 3. 19.자 고시 : 36개 추가 지정(489~524번)

4. 요건 -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분석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일 것
- 2)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 3)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4) 주무관청이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을 할 것
- 5)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할 것

◆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 6. 19.>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6. 19.>

1.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IV. 비영리법인 총회 의사록 공증제도 개선안¹²⁾

1. 개선의 필요성

법인의 경우 일정한 의결 사항의 경우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변경사항이 법인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 원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회원이나 조합원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단체 실무자가 법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총회 등을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진행한 후 공증 및 등기신청 단계까지 스스로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특히 회의 후 의결 사항의 공증을 위해서는 출석한 회원(조합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공증위임장과 개인 인감증명서를 총회 전에 미리 고지 후 징구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아가 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에서의 의결 정족수 등 요건 충족을 검토하고 공증에 필요한 기타 많은 서류들을 단체 실무자가 사전에 준비하기에는 더더욱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절차요건 흠결이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징구를 위해 총회를 다시 소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비영리법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총회 등의 의사록 공증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개선안¹³⁾

1) 총회 등 비영리법인 운영 및 의사록 공증 관련 교육·상담 시스템 구축

서울시NPO지원센터 등 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 관련 유관기관이 대한공증인협회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총회 등 비영리법인 운영 및 의사록 공증 관련 상담을 지정된 시간에 하고, 정기적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의사록 작성 및 공증 관련 교육을 하는 등의 방안을 우선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2) 대의원회의 신설 - 정관의 개정으로 가능

회원이나 조합원의 수가 많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에 총회와 별도로 대의원제도를 두고서, 대의원회가 최고의결기구로써 법인의 모든 의결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경우가 있다.

12) 이하 글은 제 사전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나 대한공증인협회의 공식 의견이 전혀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차원의 글이고,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는 마중물 정도의 역할만 감히 하여도 저는 만족합니다.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증 실무자와 학계 및 관련 부처가 공증 관련 법령 및 법무부 법인의사록지침 등의 개정 등을 포함한 심도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13) 이하 개선안 순서는 현행 법령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개선안부터 논한 후 지침 개정해야 하는 개선안, 그 다음에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개선안들의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3) 서면결의 활용 -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해 대면 총회가 어려운 경우 더욱 유용.

「민법」은 예산 결산에 대한 결의 사항은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하지 않는 한 총회 결의사항으로 보고 있고(민법 제68조), 총회결의는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는데(민법 제75조 제1항), 이 때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73조 제2항),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민법 제75조 제2항).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예산결산 사항에 대한 결의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사원들을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이를 결의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소멸된 이후에도 현행 공증관련 법령상 계속 활용 가능한 제도이다.

4)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총회(이른바 ‘온라인 총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의 방법으로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민사회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에 의해, 국무총리실은 2020. 3.경 법무부와 협의 거쳐 그동안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를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비영리법인의 총회결의 방법에 있어 공익법인법과 달리 서면결의에 의한 방식을 막고 있지 않는 점, 그 외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등에 의한 총회결의 진행 또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필자 또한 관련 법령의 해석상,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ZOOM 등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이른바 ‘온라인 총회 등’)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총회 등을 한 경우라도 안전별 실질적인 토론을 할 것이 요구되고, 온라인 이사회나 총회 후 법인의사록 작성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국무총리실 공문만으로는 코로나19가 소멸된 이후에도 주무관청과 등기소에서 온라인 총회나 이사회 개최, 온라인 총회 등 의사록에 의한 공증 및 등기 신청을 계속 허용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위 허용근거 및 비영리단체들의 공익활동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온라인 총회를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5) 공증서류의 간소화

의사록 공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많은 편이다. 청문인증의 경우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 회의의 의결절차와 의결과정을 잘 모르는 대리인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서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고 형식상 진술서를 작성해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청문인증의 경우에는 확인서만 받고, 공증인이 직접 참석하여 회의진행을 확인하는 참석인증의 경우에는 진술서와 확인서를 다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6)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법인 지정 제도의 개선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나, 공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의사록 인증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총회와 관련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기 위해 회원이나 조합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징구할 필요가 없어진다.

①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에 관한 매뉴얼”의 제정 및 공개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서 규정한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이하 ‘지정’) 요건 중 일부 요건들이 추상적 개념으로 표현되어 있고, 주무관청 담당자의 판단의 여지가 있어서 그 의미가 모호하여 법률 명확성(明確性)의 원칙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시행령 조항은 최소한 그 법령의 구속력이 미치는 시민과 법을 해석·적용하는 사법기관 구성원이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가 명확해야 한다.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 지정 여부를 심사할 때,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

국민주택형 공영아파트 당첨 기준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거래처 공개입찰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공개입찰 기준(도시정비전문관리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법무법인 등 선정 기준)과 같이, 위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세부 기준(아래 예시)을 마련하여 점수화한 다음 일정 점수 이상이면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의 세부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지침” 제정 및 세부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공익성 - 사업 목적, 사업 실적, 수혜 계층, 수혜 규모, 지속성
- ㉡ 투명성 - 예결산 공개, 수입·지출 공개, 경영 공시
- ㉢ 민주성 - 총회, 이사회 등 각종 회의 진행 등 정상적 운영여부,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보장 정도, 회원들의 참여도
- ㉣ 개방성 - 신규회원 가입 가능성, 탈퇴의 자유 여부
- ㉤ 건전성 - 자본금, 수입 등 재정 자립도, 내부 통제제도 유무(내외부 감사 유무, 감사보고서 유무), 상근 직원 유무, 상근 직원 숫자, 회원 수, 예산 규모, 설립연도

② 정기적 지정고시 제도

전술한 최근 3개년(2018~2020.10.22.현재)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고시 현황에 의하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에 관한 매뉴얼”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년 법인 지정 고시일이 부정기적이고 예측하기가 어렵다. 본 발제문 17쪽(부록 38쪽 참조)에 의하면 1~2개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과연 지정 법인의 쿼터제가 있는지 여부나 지정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여부가 의문시된다. 지정고시기간을 정하여(예건대 분기별,

분기별이 어려우면 반기별이라도) 서비스이용자인 단체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담당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③ 지정 제외 전 사전 보완 기회 부여

지정 거부당한 법인의 경우 그 실망감과 낭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인증 제외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과 비용이 물거품되고, 다시 재지정 신청을 하자니 어떤 이유로 거부당하였는지 그 이유도 속 시원하게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를 대신하여,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법인 및 협동조합 특히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모든 활동 자체가 공익적이다.

이러한 공익적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지정 제외 전 보완하여 지정받도록 하는 노력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일방 거절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치행정(法治行政)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지정 제외 전 사전 보완하여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 후 지정받거나 지정제외 후 다시 재지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선진 민주국가(民主國家)라 할 수 있다.

④ 지정 제외 여부 통지 제도

현재의 지정 제도는 지정 받은 법인조차 도대체 언제 지정하였는지 아니면 지정 거부당하였는지 알려주지 않아 오매불망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정고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면서 신청 법인에게 지정 여부에 대하여 서면 통지를 하는 것이 민주적 행정절차라 할 것이다.

⑤ 지정 제외 법인의 정보공개청구제도

지정 제외 법인은 지정 제외 사유를 알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때 지정 제외 관련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情報公開)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지정제외사유 관련 정보는 지정제외법인이 청구할 경우 위 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정 제외 법인은 위 정보공개법을 활용하여 지정제외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재지정신청할 때 참고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⑥ 지정 제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제제도

법무부의 지정 제외 결정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상 '처분'(處分)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정 제외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의사록인증 제도의 폐지

영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사록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장기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의사록인증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이자 법 문화적 토양의 산물이다. 최근 법무부도 과거에 비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의사록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그 부작용을 비영리법인을 감독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감독을 더욱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만하다.

8) 사서인증의 방법을 통한 공증

의사록인증을 공증인법 제66조의2가 규정하는 의사록인증 방식이 아닌 사서인증 방식(공증인법 제57조)으로 하는 방법도 현행 공증제도상 매우 어렵지만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사서인증 방식으로 하면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의장과 이사(협동조합의 경우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의 개인인감증명서만 제출하면 공증이 가능하다. 다른 회원들의 인감증명서와 공증위임장 제출이 불필요하다.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의장과 이사(협동조합의 경우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가 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책임지고 사서인증의 방식으로 의사록을 공증하는 방안이다.

9) 선서인증제도 활용

의사록에 대하여 사서증서의 인증을 하면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자로 하여금 직접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고 그 사실을 적어서 인증하는 방법이다.

의사록 인증제도는 1970. 12. 31. 제정된 구 간이절차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그런데 선서인증 제도는 2009년 공증인법 개정으로 비로소 도입되었다(공증인법 제57조의2). 의사록 인증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선서인증 제도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의사록 인증에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는 일은 선서인증의 선서와 유사하다. 먼저 선서에 관해서 보면 선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공증인법 제57조의2 제3항). 또한 선서인증의 경우 허위선서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제재가 따른다.

의사록 작성자 중 의장이 선서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책임지고 선서인증의 방식으로 의사록을 공증하는 방안이다.

부록 1. 사단법인 총회 의사록 샘플

임시총회 의사록

사단법인 000

2020년 0월 0일 0시 서울시 00구 00길 00 법인 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사원총수 00명, 출석사원수 00명

의장인 대표권 있는 이사 000는 정관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사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임원선임의 건

의장은 본 법인의 임원들이 임기만료임을 설명하고 그 선임방법을 묻은 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로 선출되다.

다 음

이사 000, 이사 000, 이사 000
대표권 있는 이사 000

위 피선거자들은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써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에 대하여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종료시간 00:00).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각 기명날인하다.

2020년 00월 00일

사단법인 000

의장 겸 대표권 있는 이사 000 (인)

이사 000 (인)

공 증 촉 탁 서									
접수 번호	-			문 서 명					
증서 등부 번호	-								
아래 촉탁인은 위 공정증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을 촉탁합니다. 인증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사무소 귀중									
1 촉 탁 인	성 명 (법 인 명)				2 촉 탁 인	성 명 (법 인 명)			
	생 년 월 일 (대 표 이 사 명)					생 년 월 일 (대 표 이 사 명)			
	주 소 (소 재 지)					주 소 (소 재 지)			
	위 출 석 확 인	①				위 출 석 확 인	①		
3	성 명 (법 인 명)				4	성 명 (법 인 명)			
	생 년 월 일 (대 표 이 사 명)					생 년 월 일 (대 표 이 사 명)			
	주 소 (소 재 지)					주 소 (소 재 지)			
	위 출 석 확 인	①				위 출 석 확 인	①		
비 고									
수 령 사 항	구 분	통수	수령자확인	촉 대 탁 리 인 인 확 인	주민등록증		증인성명		
	증서정본		①		운전면허증		증인성명		
	증서등본		①		공무원증		면식번호		
	인 증 서		①		여 권				
	법률행위의 목적가액		수수료		주 임	사 무 장	공 증 인		
		원	원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의사록 공증 구비서류

1. 총회의사록, 이사회이사록 원본 2부
2. 진술서(“진술인”란에 대리인 이름, 주소 기재, 날짜는 공증일자 기재, 대리인 막도장이나 인감도장 날인)
3. 확인서(“확인인”란에 법인명, 대표자 이름, 법인주소 기재, 날짜는 회의일자 기재, 법인도장 날인)
4. • 회원명부, 조합원명부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해당)
• 각 명부 우측 상단에 회의일자 기재, 하단에 법인명, 대표자 이름, 법인주소 기재
5.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창립총회의 경우 불필요.
6. 정관 사본(표지에 원본대조필 기재후 법인 인감도장 날인)
7. 위임장(공증문서명 그대로 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의 의사록 이라 기재)
8. 법인 인감증명서
9. 회원(총회), 이사(이사회)의 개인인감증명서(공증 신청시 필수 서류)
10. 소집통지서(공고문, 우편통지서 혹은 이메일 발송 통지)
11. 관할 관청의 승인(허가)서 사본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창립총회의 경우)

**** 대리인 ****

신분증, 도장 꼭 지참.

부록 4. 의사록 및 공증 구비서류 작성 참고사항

※ 의사록 및 공증 구비서류 작성 참고사항

1. 회원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원본(싸인 또는 날인 필) 2부
: 도장 날인시 막도장 가능. 법인 도장과 날인한 이사(감사) 도장 모두 간인.
2. 진술서 1부 : 진술인 란에 오시는 분 이름, 주소 기재, 도장 날인
3. 확인서 1부 : 확인인 란에 법인명, 법인주소, 대표자 이름 기재, 법인 도장 날인
4. 총회의사록의 경우 회원 명부 1부
: 2행 이하에 회원 성명, 출자 구좌수(협동조합),
회의출석, 의결찬성, 인증축탁에 해당자 ○ 표기,
마지막행에 총회원수, 회의참석회원수,
의결찬성회원수, 인증축탁회원수 기재
5.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3개월 이내 발급)
: 창립총회의 경우 불필요.
6. 정관 사본 1부
: 표지에 원본대조필(기명 또는 자서) 후 법인 도장 날인과 간인.
정관 말미 법인명, 법인 도장 날인
7. 공증축탁용 위임장 1부
: 위임인란에 법인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기재 후 법인 도장 날인.
조합원/회원의 각 개인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 날인한 위임장,
수임인란에 공증대리인(오시는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위임장 중단 '다음' 하단에 정기(또는 임시) 회원총회나 이사회라 기재.
8. 필수 지참물 : 오시는분 신분증과 막도장

부록 6. 사단법인 회원 명부 양식

회 원 명 부				
20 년 월 일 현재				
회 원 명	회의출석	의결찬성	인증촉탁	비고
총회원수	출석회원수	의결찬성회원수	인증촉탁회원수	
<p>위 회원명부는 본 법인에 비치된 회원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법인명 소재지 대 표 자</p>				

부록 7. 협동조합 조합원명부 양식

조 합 원 명 부				
20 년 월 일 현재				
조합원 성명	회의출석	의결찬성	인증축탁	비고
총 조합원 수	출석 조합원 수	의결찬성 조합원 수	인증축탁 조합원 수	
<p>위 ‘조합원명부’는 본 조합에 비치된 ‘조합원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조합명 소재지 대표자</p>				

부록 8. 공증 위임장 양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위 임 장	
수 임 인	성명 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 양승원 사무 소 에서 다음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 임합니다.	
다 음	
년 월 일	
위 임 인	성명 인 감 주소
위 임 인	성명 인 감 주소
위 임 인	성명 인 감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m²)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2020.3.2., 설립지원팀)

□ 추진배경

-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면총회로 하여야 함
- 조합은 총회지연으로 사업계획·예산, 결산보고서 등을 승인 받지 못해 사업추진 등 조합 운영에 애로 발생

□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 (허용기간) '20.3.2(월) ~ 추후 재공고시 까지
- (의결안건)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 다만,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은 향후 대면총회 시 의결토록 권고

*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의결(다른 사항은 과반수 찬성)하는 사항(기본법 §29②)으로 (i)정관변경, (ii)합병·분할·해산·휴업, (iii)조합원 제명, (iv)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사항

- (사전절차) 서면총회 개최여부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 개최
- (사후조치) 개최결과 공유(대면총회 시 추가보고 등)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에 대응)

※ 조합은 서면총회 개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절차를 조합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료를 공유

□ 관련 문의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044-215-5934, 5936)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031-697-7731~7735)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안내 2p 참조)

부록 11. 서울시의 공익법인 및 민법상 비영리법인 총회 결의 관련 안내문(2020.3.3.자)

*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관련 안내

1. 서울협치담당관-428(2020. 1. 9.)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이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비영리법인의 총회 및 이사회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에 대한 문의사항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소관 비영리법인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서울시 NPO지원센터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snpo2013>)

붙임 비영리법인의 총회 및 이사회 결의 관련 안내문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5

주무관 **정규전** 공익활동지원팀장 **정연주** 서울협치담당관 **03/03 이등석**

발주자

시행 서울협치담당관-3035 () 접수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60 / 전송 02-768-8893 / codejkj@seoul.go.kr / 대시민공개

비영리법인의 총회 및 이사회 결의 관련 안내문

1.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이사회 결의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익법인법)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사들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금지하는 서면결의 해당 여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즉, 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이사임을 확인),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 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한 이사회 진행은 금지되는 서면결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공익법인은 이사회 소집을 물리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이사회 결의가 가능.
※ 단, 회의록 작성시 참석한 의장 및 이사의 기명날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이사들의 결의에 대한 사항이 지정된 장소, 시간 내에 도달하여야 함.

2. 민법 상 비영리법인 총회 결의

- 민법 상 총회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는데, 이때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결의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사원들을 모으지 않고 서면으로 이를 결의할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의 총회 결의방법에 있어 공익법인법과 달리 서면결의에 의한 방식을 막고 있지 않는 점, 그 외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등에 의한 총회 결의 진행 또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움.
※ 단, 회의록 작성시 참석한 의장 및 이사의 기명날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사원들의 결의에 대한 사항이 지정된 장소, 시간 내에 도달하여야 함.

3. 민법 상 비영리법인 이사회 결의

- 민법상 비영리법인 이사회 결의사항은 정관에 따르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함.

4. 사업실적 서류제출 유예기간

- 서울시가 관리 감독하는 비영리법인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총회 미진행, 혹은 연기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4월 30일까지 서류를 제출 하되, 별도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안내

부록 12. 국무총리실의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관련 보도자료(2020.3.5.자)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총리실,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확산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 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의하면, 비영리·공익법인은 매년 총회 등을 소집하여 결산 사항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확정된 사업실적 등을 소관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사업년도 끝난후 2개월내(각 부처 규칙),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령 제19조 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의 방법으로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민사회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이에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그동안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를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업무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서류제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이 기한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붙임1.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 소집 관련 법무부 의견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이사회 결의 방법]

○ 「공익법인법」은 예산·결산에 대한 결의 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공익법인법 제7조 제1항) 있는데,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공익법인법 제9조제3항)

○ 공익법인법이 이사회의 의사가 서면결의에 의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이사들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금지되는 서면결의 해당여부 또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즉, 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①이사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②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이사임을 확인), ③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간의

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한 이사회 진행은 금지되는 서면결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공익법인은 이사회 소집을 물리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적절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총회 결의 방법]


○ 「민법」은 예산결산에 대한 결의 사항은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하지 않는 한 총회 결의사항으로 보고 있고(민법 제68조), 총회결의는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는 데(민법 제75조 제1항), 이 때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73조 제2항),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음(민법 제75조 제2항)

○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예산결산 사항에 대한 결의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사원들을 모으지 않고 서면으로 이를 결의할 수 있음

- 나아가 비영리법인의 총회결의 방법에 있어 공익법인법과 달리 서면결의에 의한 방식을 막고 있지 않는 점, 그 외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등에 의한 총회결의 진행 또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움

부록 13. 화상공증 가능 전국 공증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증사무소 방문이 불편하세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한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사서증서, 의사록, 정관 등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주소 : <https://enotary.moj.go.kr>

• 화상공증 가능 공증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문의 법무부 법무과 : 02-2100-3169

연번	관한검찰청	공증사무소명	연락처
01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법무법인 해냄	02-541-7230
02		법무법인 코러스	02-747-9500
03		법무법인 양재	02-522-4264
04		법무법인 신한	02-778-6313
05		법무법인 봄	02-3477-2103
06		법무법인(유한) 한길	02-551-2211
07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	법무법인 정일	02-2605-0245
08		법무법인 강서	02-2602-6699
09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법무법인 동일	02-403-8911
10	수원지방법검찰청	공증인 남상우(안산제일공증인합동사무소)	031-414-9988
11		법무법인 다산	031-213-2100
12		법무법인 디지털	031-732-7700
13	인천지방법검찰청	공증인 배영철	032-501-8484
14		법무법인 로시스	032-861-8080
15		법무법인 황해	032-873-8300
16	대전지방법검찰청	대전종합 법무법인	042-489-9892
17	대구지방법검찰청	천마 법무법인	053-744-3824
18	창원지방법검찰청	경남 법무법인	055-266-3005
19		동서 법무법인	055-284-3200
20		창원 법무법인	055-283-6666
21	전주지방법검찰청	법무법인 백제	063-275-7070

부록 14.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2020.10.22.자) : 104개 추가 지정(761~864번)

법무부 고시 제2020-426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22.

법무부장관

761. 의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762. 한국콘텐츠진흥원

763. 사단법인 한국산업자산관리협회

764.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765. 재단법인 강원연구원

766. 해늘사회적협동조합

767. 세종도시교통공사

768. 사단법인 정보화사회실천연합

769. 한국사회복지사협회

770.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771.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772. 재단법인 용인시정연구원

773.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774. 나모사회적협동조합

775. 대한주택건설협회

776.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보존회

777.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778.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오광대보존회

779.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보존회

780.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보존회

781.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은산별신제 보존회

782.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

- 783.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평택농악보존회
- 784.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이리농악보존회
- 785.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농악보존회
- 786.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임실필봉농악보존회
- 787.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구례잔수농악 보존회
- 788.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김천금릉빛내농악보존회
- 789.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남원농악보존회
- 790.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진주검무보존회
- 791.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단오제보존회
- 792.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복청사자놀이보존회
- 793.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봉산탈춤보존회
- 794.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8호동래야류보존회
- 795.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보존회
- 796.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승전무보존회
- 797.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안동차전놀이 보존회
- 798.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
- 799.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보존회
- 800.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보존회
- 801.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강령탈춤보존회
- 802.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처용무보존회
- 803.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학연화대합설무보존회
- 804.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수영야류보존회
- 805.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경산자인단오제 보존회
- 806.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피리정악 및 대취타보존회
- 807.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보존회
- 808.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영산제보존회
- 809.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남도들노래보존회
- 810.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보존회
- 811.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은율탈춤보존회
- 812.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좌수영어방놀이보존회

- 813.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존회
- 814.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
- 815.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양주소놀이굿보존회
- 816.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 817.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보존회
- 818.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가산오광대보존회
- 819.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기지사줄다리기보존회
- 820.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택견보존회
- 821.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보존회
- 822.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동해안별신굿보존회
- 823.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존회
- 824.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위도띠뱃놀이보존회
- 825.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남해안별신굿보존회
- 826.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구례향제줄풍류보존회
- 827.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
- 828.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보존회
- 829.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예천통명농요보존회
- 830.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석전대제보존회
- 831.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86의2호 면천두견주 보존회
- 832.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두산손명주연구회
- 833.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황해도평산소놀이굿 보존회
- 834.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제주민요보존회
- 835.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서울새남굿보존회
- 836.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사직대제보존회
- 837.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범성포단오제보존회
- 838.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삼화사수륙제보존회
- 839.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진관사수륙제보존회
- 840.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아랫넛수륙제보존회
- 841.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작법보존회
- 842.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

843. 누림사회적협동조합

844. 함께배움 사회적협동조합

845. 서울남산초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846. 동강상생사회적협동조합

847.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848. 천안오성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849. 주천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청정주천

850. 세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851. 안다미로 사회적협동조합

852. 양산희망학교사회적협동조합

853. 금곡고 사회적협동조합 버디쿵

854. 서중초사회적협동조합말꽃

855. 마을교육공동체 세원고사회적협동조합

856. 송산고 마을교육공동체 개방형 사회적협동조합 핑거스넥

857. 신비고사회적협동조합도토리

858. 추풍령킴피스 사회적협동조합

859. 고산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고순도순

860. 익산부송중학교도담사회적협동조합

861. 전라중학교 생그레 사회적협동조합

862.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863.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동행

864. 서부산공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참 고 문 헌

1. 공증실무(개정판), 대한공증인협회, 2013.5.
2. 남상우, 의사록 인증방법에 관한 고찰, 대한공증인협회, 공증과 신뢰 2015(통권 제8호), 10쪽
3. 남상우, 서면결의 및 간주서면결의에 관한 고찰, 대한공증인협회, 공증과 신뢰 2014(통권 제7호), 117쪽
4. 박상진, 법인의사록의 인증, 대한공증인협회, 공증과 신뢰 2011(통권 제4호), 67쪽
5. 김교창, 주주총회의 운영, 육법사, 2002
6. 대한공증인협회 홈페이지 게시물
7.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물
8. 공증인 한정화 홈페이지 게시물

의사록 공증

해야만 할까요?

공증인 양승원 변호사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공증! 왜 하는가?

- 분쟁예방, 진정 문서로 추정
- 신속한 강제집행(집행 공증만)

의사록 공증! 꼭 해야 하나?

-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 담보
- 법인 등기 공시 정보의 정확성 보장
 - 거래 안전과 원활 도모
 - 결의에 대한 강력한 증거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의사록의 형식적 요건

- 의사록 작성의무자 – 의장(대표), 임시의장
- 의사록에 서명/기명 날인할 자
 -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이사회
- 의사록 기재사항 –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기재
회의의 명칭, 일시, 장소, 개회 시각, 성원보고,
개회 선언, 안건 상정, 제안이유, 질의응답, 토론,
성립여부, 폐회 선언, 폐회 시각, 작성 연월일,
법인 명칭, 서명(또는 기명날인)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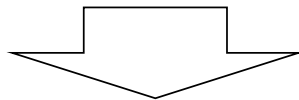
의사록 공증 신청시 주의사항

1. 의사록 원본 2부 작성하기, 공증사무소 사전문의
2. 누가 신청하는가?(인증촉탁인)
3. 정관에 정해진 소집절차대로 진행되었는가?
4. 제출한 정관 사본을 기준으로 심사
5. 서면 의결권 행사 시에는?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총회 출석시 인감증명서와 공증위임장은?

의사록 기명날인자 + 인증촉탁인(출석,찬성)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의사록 공증 필요서류

- 의사록 원본 2부
- 확인서
- 진술서
- 사원명부(조합원명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정관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인감증명서(공증위임장 인감도장날인)
- 소집통지서 - 의결의 적법성(절차, 실체)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전자공증

2010년 시행, 전자공증시스템 접속, 지정공증인 선택, 방문

- 1) 전자문서의 인증 - 시스템에서 작성한 문서를 PDF파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
- 2) 전자화문서의 인증 - 지정공증인이 스캔한 문서의 인증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문서를 USB 저장, 교부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화 상 공 증

1. 2018년 시행, 인터넷 화상장치(컴퓨터 웹캠이나 스마트폰)를 통한 화상통화로 전자문서 인증
2. 언제, 어디서나 가능(공증 사무소 방문 X)
3. 전자공증시스템 접속, 전자문서(PDF) 등록, 지정공증인
4. 공인인증서(또는 폰 인증), 신분증, 핸드폰, 대상 문서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 대한공증인협회
<http://www.koreanotary.or.kr/>

전자공증시스템
<https://enotary.moj.go.kr>

- 법무부 화상공증 무작정 따라하기(이론편)
<https://youtu.be/IfN2mhs-4T4>

- 법무부 화상공증 무작정 따라하기(실전편)
<https://youtu.be/JBxO-ILJR68>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의사록 인증제외 제도

1. 의사록 인증제도 - 1970년 구 간이절차특례법
2. 의사록 인증면제제도 - 1972년 신설(공법인, 비영리법인), 2009년 소규모회사 발기설립 추가, 2017년 공증인법 66조의2 단서(1~3호) 신설
3. 공증인법 시행령 37조의3 인증제외 요건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의사록 인증제외 제도 개선안(1)

1. 의사록 공증 관련 교육 · 상담 시스템 구축
2. 대의원회 신설
3. 서면결의 적극 활용
4. 온라인 총회
5. 공증서류의 간소화 - 법인의사록지침 개정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의사록 인증제외 제도 개선안(2)

< 의사록 인증 제외 법인 지정 제도의 개선 >

1. 매뉴얼의 제정 - 공익성, 투명성, 민주성, 개방성, 건전성
2. 정기적 지정고시 제도
3. 지정 제외 전 사전 보완 기회 부여
4. 지정 제외 여부 통지 제도, 정보공개청구제도 활용
5. 지정 제외 이의신청 등 구제제도 활용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의사록 인증제외 제도 개선안(3)

< 공증인법 제66조의 2 1항 단서 개정, 각호 추가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각 협동조합연합회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의사록 인증제외 제도 개선안(4)


1. 의사록 인증 제도의 폐지 검토 - 장기적 과제
2. 공증면제 시 감독기관 필요 - 장기적 과제
 - 중앙부처 사회적경제 부서 설치, 주무관청, 지자체
 - 수탁 감독기구
3. 사서인증 방식의 의사록 공증 ? - 공증인법 제66조의2
4. 선서인증제도 활용 ? - 공증인법 제57조의 2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감사합니다


공증인 양승원 변호사
<http://goodnotary.co.kr/>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토론1.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외 사례 : 비영리법인 사례



 심전호 충남시민재단 팀장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외 사례

비영리법인 사례

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

공증... 불편했던 기억

000 협동조합 – 사무실 이전(2015년)

등기소 방문 ---> Back!! ???

다시 시작

> 소집 (총회/이사회)

> 의사록 작성

> 공증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모으고 찍고, 공증비용

> 등기소

- ✓ 등기 변경하려면 **의사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걸 몰랐다.
- ✓ 등기소에 제출하는 의사록은 **공증** 받아야 한다는 걸 몰랐다.
- ✓ **모르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스템
- ✓ 사무실 이사하는데도 이런 게(의사록과 공증) 필요한 건가?
- ✓ 너무 **과한 거 아닌가?**
- ✓ 나의 **무지함인가?**

공증... 불편했던 기억

#모르는 게 너무 많다.

- ✓ 공증은 어디서 받아야 하지?
- ✓ 비용은 얼마나?
- ✓ 회의 참석한 모든 사람이
 - 의사록에 인감날인을 해야 하나?
 - 인감증명서 모두 첨부해야 하나?

#공증 사무소(공증인)는 어디에?

충남 전체에 단 8곳???

(법무부. 2020.10.22)

- ✓ 공증인가 법무법인 : 전국 228개 중 **충남 4(천안3, 홍성1)**
- ✓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 전국 20개 중 **충남 0**
- ✓ 임명 공증인 : 전국 82명 중 **충남 4명(서산, 아산, 당진, 천안 각 1명)**
- ✓ 지정공증인 전국 96개 중 **충남 2개(천안2, 공증인가법무법인과 겹침)**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무게

의사록 공증 제외법인 지정 받기

#존재를 알다.

- 언 제 2019년 1월 즈음?
- 어떻게 우연히-선 경험자(광주NGO센터)
- 검 색 어디에도 검색이 안 된다
- 지정 공고 뿐.
- 절차 방법 규정(매뉴얼) 찾을 수 없다

#도전!!

- 2019.03 충남도청에 공문으로 추천 요청 / 당황 & 모름
- 2019.07 인사이동. 담당자 바뀜
- 2019.08 (도청)자료 요구/정관, 총회자료집, 회의록 등 제출
도청-> 법무부 추천서 접수
- 2021.01 인사이동. 담당자 바뀜
- 2021.02 법무부 공시 확인(우연히). 개별 통지 받지 못함
법무부 고시 제2019-282호(2019.12.02일자)

#성공 ~어쨌든 지정은 받았다.

의사록 공증 제외법인 지정 받기

- ✓ 생소했다.
- ✓ 도 내에서는 관련 사례를 찾을 수 없어 타 시도 사례를 탐문해야 했다.
- ✓ 법무부 내 업무담당자 찾는데 시간 걸렸다.
- ✓ 관련 지침, 매뉴얼, 기준 등이 없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았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 ✓ 의사록 공증을 제외 해 준다는 건 그 법인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신뢰 한다는 건데
- ✓ 행정입장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판단(?평가?) 할 것인지 모호했다.

#담당 공무원-A주무관

담당부서가 법인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있었기에 추천이라도 해 줄 수 있었지 않을까

#담당 공무원-B주무관

- ✓ 기간 오래 걸리고 중간과정 없어 답답함.
- ✓ 신청 후 중간 진행 상황 안내도 없고, 물어봐도 진행 중이라고만 한다.
- ✓ 소요기간이라도 정해져 있으면, 기간이 단축 될 수 있을 텐데
- ✓ 매뉴얼과 교육 필요

지정은 받았는데

#어떻게 써야 하지? 경험자에게 물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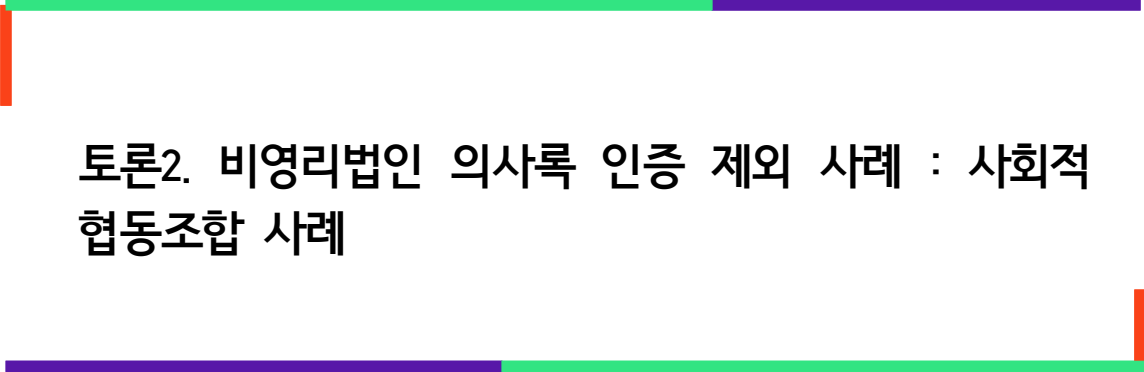
- ✓ 등기사항 변경 시 법무부 고시 첨부
- ✓ 그래도, 등기소 별로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등기소에 확인
- ✓ 어떤 난관이 또 있을지는 아직 모름

#두려움 반, 기대 반

- ✓ 아직 활용해 볼 기회가 없었다.
- ✓ 진짜 인정 받나? 등기소에서 별 일 없을까?
- ✓ 내년(21년) 2-3월 쯤 경험 할 수 있을 듯

마치며- 고민...

- 의사록 공증 제외법인 제도를 활성화 하는 것이 유효한가?
- 공증 제도 자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 인감날인, 인감증명 등 인감 자체에 대한 문제와의 연결점



토론2.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외 사례 :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민영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민앵



0. 총회 회의록 공증 면제 관련 법

- ◆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 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 ◆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1.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 의료사협 설립 목적 : 정관 제2조

000의료사협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1.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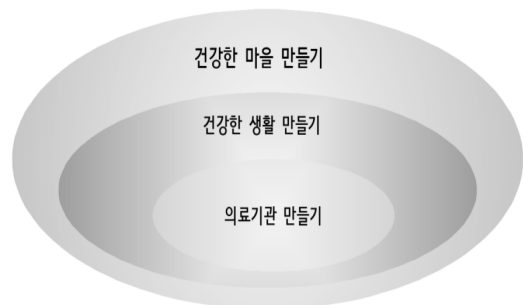
[그림1 건강의 주요결정요인]



Dahlgren-Whitehead Model

출처 : <https://m.blog.naver.com/nam903/221225346365>

[그림 2. 의료협동조합 전략]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1.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표1 의료사협 현황〉

구분	조합원	출자금	활동 조합원	건강한 관계망			총공급고
				소모임	마을 모임	지역 모임	
2016년	38,420세대	103억	3,964명	176	47	96	264억
2017년	41,243세대	117억	3,830명	161	60	29	325억
2018년	44,922세대	126억	2,847명	187	48	47	362억
2019년	48,254세대	130억	2,898명	211	55	66	402억

출처 :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총회 자료집(2020)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1.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설립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3년 6월 (공정거래위 인가 한국의료생협연대) 2013년 10월 (의료생협을 의료사협으로 전환, 기획재정부 연합회 설립 인가1호) 	
회원 조합 현황	조합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24개
	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조합 취약계층지원 합산 265,061천원 2019년 결산기준)
	사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77개 사업소 의원, 한의원, 치과, 가정간호사업소, 재가장기요양센터, 검진센터, 운동센터 등 - 2020년 12월 현재 80여개소
	직원 고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758명 (의사 77명, 간호사 64명, 간호조무사 134명, 치과위생사 55명, 사회복지사 34명, 요양보호사 242명, 작업치료사 9명, 사무행정 및 경영담당자 143명 등) - 2020년 12월 현재 1500여명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불법적 의료기관 난립 단속

'사무장병원 의혹' 대형병원 400억원대 요양급여비 환수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측에 관련 의료진술 기밀 부여

입력 2020.12.01 17:43:39



서울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
▶ 얘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백의로인들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혹에 시인 대전 대형병원이 400억원대 요양급여비 환수 여부를 눈을 뜨게 되려 했다.

1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앙본부는 지난달 17~18일 사무장병원 운영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대형병원 측에 요양급여비용 463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주요뉴스

아예 718명

변장을 끝수

결박사다!

3인 갈매, 택

*정간자 그려

[단독]사무장병원 운영해 300억 가로챈 '병원사냥꾼' 검송치

CBS노컷뉴스 세민선 기자 | 2020-11-10 05:00

뉴스듣기

0

11

가

☞

의료기전문업체 회장 등 7명 3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해 140억 사기 대출...병원 운영에 사용
종합병원급 사무장병원 적발은 국내 처음...300억 환수될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로또941회 당첨 "영장" 쉽다.. 무조건 "이번호" 찍어라! 이번주 1등 당첨!
▶ 로또용지 광부로 버려진 관영... "용지유통" 확인하니 1등 당첨 비밀 발견!!

S/N
SAEWAL
NO.1
산업단지 전문

오늘의 기자

최소영 11월 11일
김주서 11월 11일

많이본 뉴스

- 1 연구와 부딪혀 송진 6세 나외 생활...20만원 통조
- 2 친구들과 캐쥬한 버스사 통 하다! 컸고 젊은 500
- 3 119명 공개출로 앞은 단 합 '추가'발급-603개
- 4 *노니 11월11일 뉴스

제도개선 토론회

1.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 장애인건강권법 법 제정에 기여 (2015~2017)
 - 장애인주치의사업 (9개조합, 노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 2019년 4개 지역 보건복지부 협력 사업 수행 중
 - 안산, 부천, 전주, 화성)
- 주거와 건강 (LH 협력 사업)
 - 시흥희망, 함께걸음의료사협, 살림의료사협(케어안심주택)
- 코로나19 대응
 - 건강의 안부 문기 운동, 선별진료소 지원, 확진자생활치료시설 지원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기본 출자금 5만원
- 최소 출자금 1억원

- 최소 조합원 500명
- 1인 출자금 제한 10%이내 (특수관계 포함)
- 잉여금 배당 금지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1. 총회 시 과반수 참여(조합원 과반수 혹은 대의원 총회일 경우 100여명이므로 최소 50명 이상 참석(대리 불가))
2. 보건복지부 감사 (건강보험공단 위탁 사무)
 - 3년 1회 정기 감사
 - 필요시 수시 감사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서면총회 임시허용, 온라인/화상회의 ?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 추진배경

-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대면총회만 가능하여 서면·전자적방식의 총회는 불가
- 조합은 총회지연으로 사업계획·예산, 결산보고서 등을 승인받지 못해 사업추진 등 조합 운영에 애로 발생

□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 (허용기간) '20.3.2(월) ~ 추후 재공고시 까지

- (의결안건)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 다만,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은 향후 대면총회 시 의결토록 권고

*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의결(다른 사항은 과반수 찬성)하는 사항(기본법 §29②)으로 (i)정관변경, (ii)합병·분할·해산·휴업, (iii)조합원 제명, (iv)말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사항

- (사전절차) 서면총회 개최여부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 개최

- (사후조치) 개최결과 공유(대면총회시 추가보고 등)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에 대응)

※ 조합은 서면총회 개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절차를 조합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료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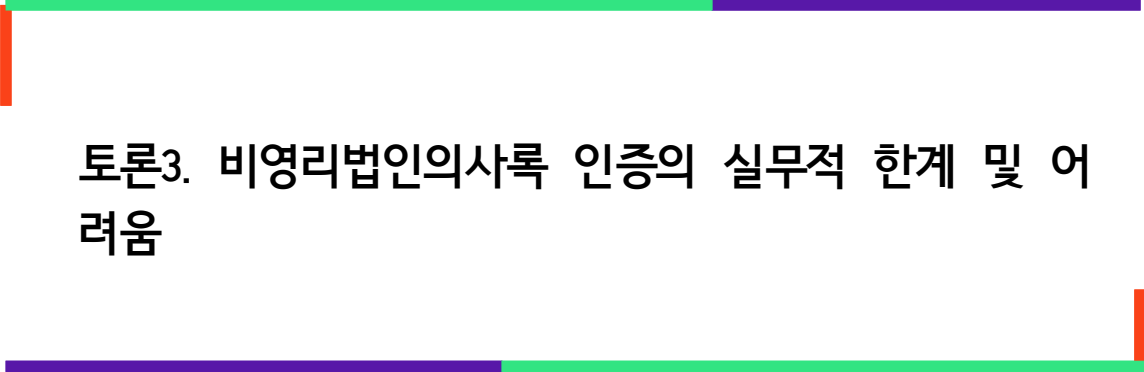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서면총회 임시허용, 온라인/화상회의 ?

개최월	해당조합	방법	해당조합	내용	해당조합
2월		2 서면	11	등기변경	13
3월		5 대면	12	연기조합	16
4월		13	23	연기횟수	23
5월		3			
		23			
의료생협1개소 : 등기변경을 하고 싶었으나, 서면으로는 인정이 안 될 것이므로 상정도 못함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감사합니다



토론3. 비영리법인의사록 인증의 실무적 한계 및 어려움

 신권화정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비영리 의사록 인증

실무적 한계 및 어려움

2020.12.15

Purna

NPO

1. 설문개요

2. 설문내용

3. 공증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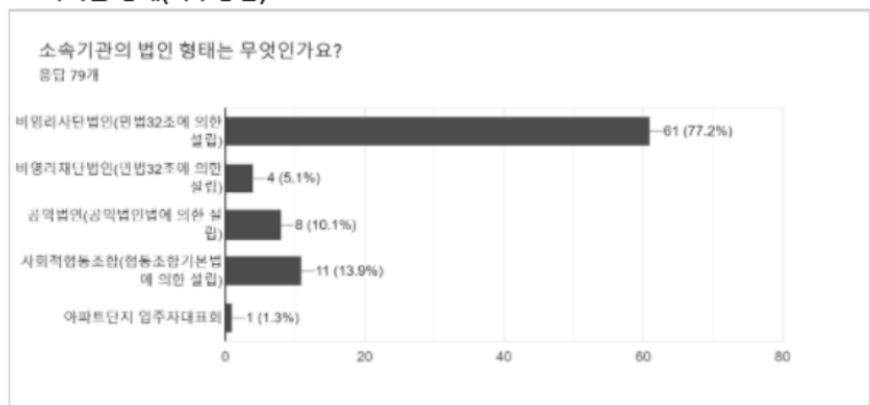
4. 주무관청

5. 문 제 점

비영리법인 총회 의사록 공증,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사기간: 2020.11.30.(월) - 12.9.(수)
- 조사대상: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사록 공증이슈와 관련된 비영리조직
- 공동기획: 사단법인 시민, 서울시NPO지원센터, 재단법인 동천

● 소속기관 형태(복수응답)



NPO

1. 설문개요

2. 설문결과

3. 공증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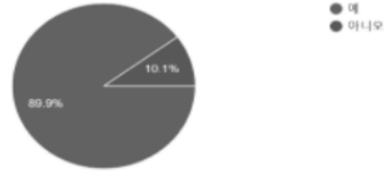
4. 주무관청

5. 문 제 점

비영리법인 총회 의사록 공증, 어떻게 생각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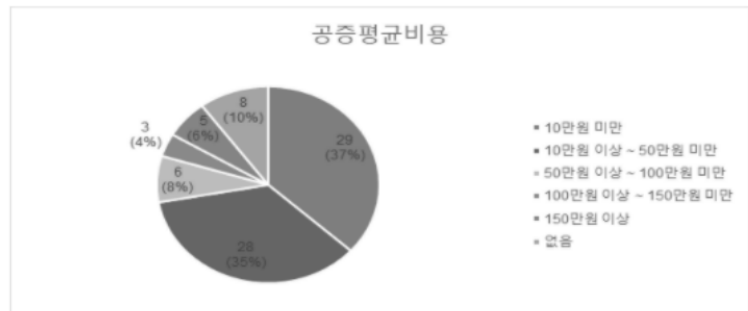
● 총회 의사록 공증 경험 여부

총회 의사록 공증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응답 79개



● 공증 평균 비용

- (토론회 참가자들의 응답 내용 중) 공증 애로사항 중 "높은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실제 비용은 평균 50만원 미만 77%
- 100만원 이상 10%



NPO

1. 설문개요

2. 설문결과

3. 공증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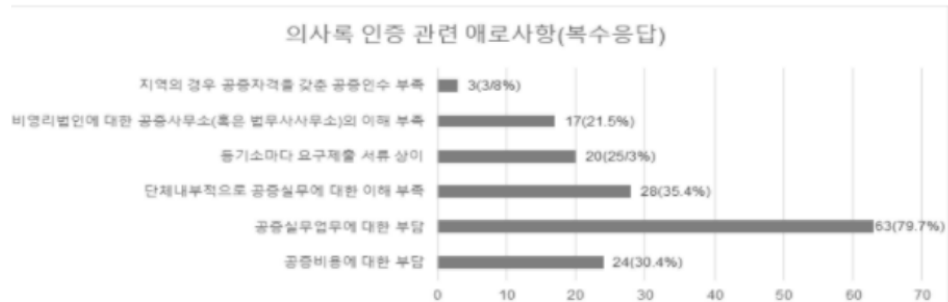
4. 주무관청

5. 문 제 점

비영리법인 총회 의사록 공증,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회 의사록 공증 받을 때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복수응답)

- 공증실무업무에 대한 부담 약 80% 이상(단체 내부 이해 부족도 상당수 차지). 공증실무 지원을 위한 전문자원연계 방안 고려 필요
- 등기소마다 요구제출 서류 상이 이유 파악 필요 : 등기소 검토 기준, 서류 일원화 확인 필요
-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증사무소 또는 법무사사무소의 이해 부족 예시 파악 필요



NPO

1. 설문개요

2.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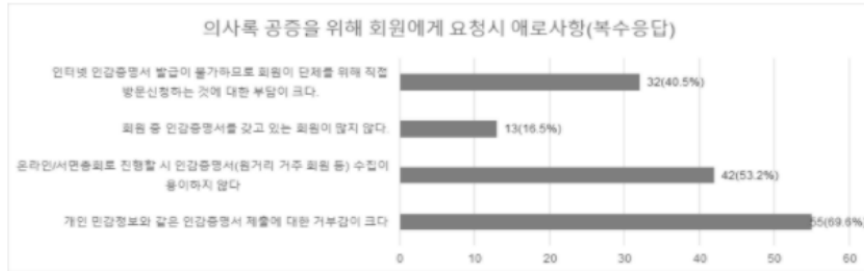
3. 공증업무

4. 주무관청

5. 문 제 점

비영리법인 총회 의사록 공증,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사록 공증을 위해 회원들에게 인감증명서와 같은 개인정보 제출 요청시 애로사항(복수응답)
 - 개인 민감정보에 대한 강한 거부감(69.6%)
 - 인감증명서 발급받기가(인터넷 발급 불가) 용이하지 않고, 온라인/서면총회가 지속될 경우 더욱 자료 수집(원본자료)이 용이하지 않음.
 - 기타의견 : 온라인 총회 진행시 출석 공증 불가, 온라인총회가 인정되지 않아 형식적으로라도 오프라인 총회 병행해야하는 상황



NPO

1. 설문개요

2.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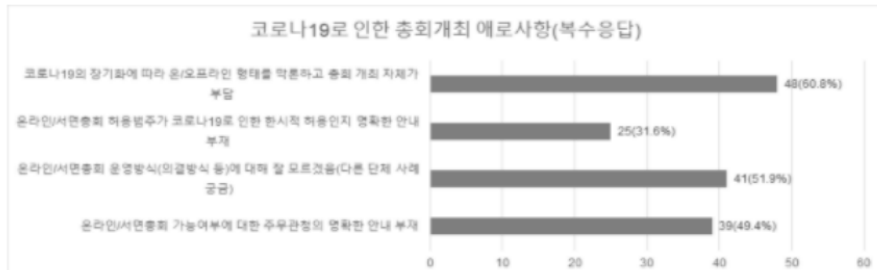
3. 공증업무

4. 주무관청

5. 문 제 점

비영리법인 총회 의사록 공증, 어떻게 생각하세요?

- 코로나19로 인한 총회개최 애로사항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총회 개최 자체에 대한 부담(50%)
 - 온라인/서면총회 가능여부 및 허용범주에 대한 구체적 안내 부재에 대한 문제인식 높음.
 - 2021년 1~3월 총회 시점이 도래할 경우 더욱 이에 대한 문의 급증 예상



NPO

1. 설문개요

2. 설문결과

3. 공증업무

4. 주무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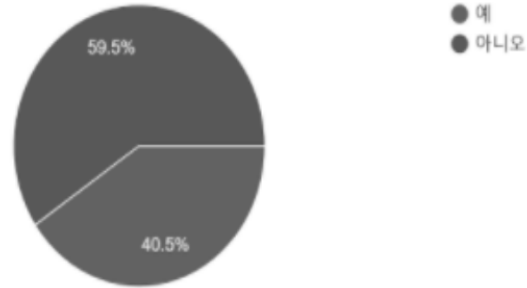
5. 문제점

비영리법인 총회 의사록 공증, 어떻게 생각하세요?

●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외제도 인지 여부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외 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요?

응답 79개



NPO

1. 설문개요

2. 설문내용

3. 공증업무

4. 주무관청

5.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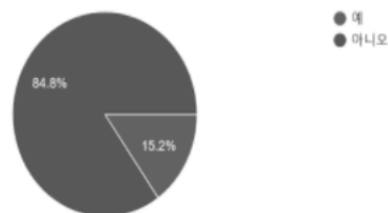
비영리법인 총회 의사록 공증, 어떻게 생각하세요?

●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외를 위해 주무관청과 소통 경험 여부

- 제도를 알고 있고 직접 해당 주무관청과 소통한 응답자 12명(15%)
- 시도해본 위 응답자의 주요 애로사항 : 담당 주무관의 이해 부재, 원칙대로 해야하므로 도움 줄 수 없다는 책임 회피, 총회의사록에 대해 무조건 공증 요구, 본인이 번거로우므로 내년에 신청하라는 안내(주무관청이 추천업무 지연), 부처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 법무부에서는 공익목적성을 증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없는 엄밀성 요구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외를 위해 주무관청과 소통한 적이 있으신가요?

응답 79개



NPO

- 1. 설문개요
- 2. 설문결과
- 3. 공증업무
- 4. 주무관청
- 5. 문제점

코로나19 시기, 임기총회와 정관변경, 사무실 이전 변경해 본 1인

	A	B	C	D	E	F	G	H	I
1			신청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총회회의록 날인,간인(막도장)				
3		정관변경허가 신청	개정된 정관 신규대표 1부		이사회회의록 날인,간인(막도장)				
4			총회회의록 1부		결 이사장	인감증명서	위원장 날인	주민등록초본 1통	사임서
5			참석자 서명부_원본대조필		신임 이사장	인감증명서	위원장 날인	주민등록초본 1통	취임서
6			기본재산 처분사유,목록,방법 서류 1부						
7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변경	등록변경신청서 1부		이사 총 5인	인감증명서	위원장 날인		
8			정관 1부(간인)		출석폐원 파반	인감증명서	위원장 날인		
9			총회회의록 1부(간인)		최권명부 사본				
10			참석자 서명부_원본대조필		정관사본 2부(간인)				
11			총회 사진		법인등기부 등본				
1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1통				
13			사무소 소재 전대차계약서 1부		법인인감카드				
14			인출등기부등본 1부		인감대지 등 법인도장 날인 서류				
15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변경	공문						
16			법인설립허가증						
17			대표자 취임승낙서						
18			이력서						
19			변경결자증명서류						
20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1		비영리법인사업보고							
22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변경							
23	은행	은행대표자변경							
24	4대보험	주소,대표자변경							
25	네이버/다음/구글	주소변경							



NPO

- 1. 설문개요
- 2. 설문결과
- 3. 공증업무
- 4. 주무관청
- 5. 문제점

코로나19시기, 임기총회와 정관변경, 사무실 이전 변경해 본 1인

공 증 추 타 서		공 증 추 타 서	
접 수 번호	문 서 명	접 수 번호	문 서 명
아래 촉탁인은 위 공증중서 작성 ? 을 촉탁합니다.			
년 월 일			
사무소 위증		사무소 위증	
1 촉탁인	정 명 (법인명) 생년월일 (대표이사명) 주소 (소재지)	2 촉탁인	정 명 (법인명) 생년월일 (대표이사명) 주소 (소재지)
	위출석확인 (인)		위출석확인 (인)
3 촉탁인	정 명 (법인명) 생년월일 (대표이사명) 주소 (소재지)	4 촉탁인	정 명 (법인명) 생년월일 (대표이사명) 주소 (소재지)
	위출석확인 (인)		위출석확인 (인)
비 고			
구 분	종 수	수령자확인	주인등작성
중 서 정 본		인	준전명인증
중 서 등 본		인	공 무 원중
인 증 서		인	여 름
법률행위의 목적가액		수	영사중명서
원		원	주 임 사 부 장 공 증 인

도장 찍는 것도 어려워...

누구 한 사람 틀리기만 해도 다시 시작

그나마 온라인 총회는 안돼..



NPO

- 1. 설문개요
- 2. 설문결과
- 3. 공증업무
- 4. 주무관청
- 5. 문제점

주무관청에 두 번 거절당한 1인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 6. 19.>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근거가 없다

특혜를 줄 수 없다

전례가 없다

다른 곳들도 다 해달라고 할 텐데 대략난감..



NJOB TREND

- 1. 설문개요
- 2. 설문결과
- 3. 공증업무
- 4. 주무관청
- 5. 문제점

공증제도의 문제점

첫째!

- 비영리법인에서 회원참여와 소통은 중요한 가치임
공증서류 구비가 어려워 대의원제를 도입하거나 그나마도 점차 줄이는 추세
결과적으로 다양한 회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 박탈

둘째!

- 서류에 회의록을 맞추게 됨
공증과 무관한 내용 삭제
사실상 선 날인 후 회의록

셋째!

- 재정 여건상 부담되고 아까운 비용임에는 틀림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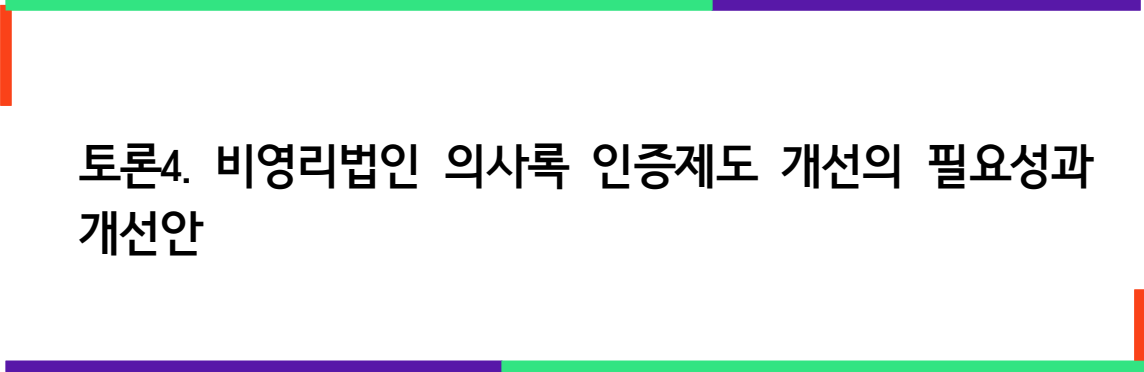
우리도 의사록인증 제외법인 되고 싶다!!

바쁘다 바빠




I'M SO BUSY

*THANK
YOU*



토론4.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안

 송시현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변호사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안

동천NPO법센터 송시현 변호사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의 개선 필요성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의 개선필요성

1. 의사록 인증의 실무상 어려움 존재

- 청문인증의 경우 : **업무 부담**

- 참석인증의 경우 : **출장 비용 부담**

발제문 中

9) 의사록 공증 필요서류 - 부록 참조

- ㉠ 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 원본 2부
- ㉡ 확인서("확인인"란에 법인명, 대표자 이름, 법인주소 기재, 법인도장 날인)
- ㉢ 진술서("진술인"란에 대리인 이름, 주소 기재, 대리인 도장 날인)
- ㉣ 회원명부(사단법인), 조합원명부(협동조합)
-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 정관 사본(표지 원본대조필 기재후 법인인감 날인)
- ㉦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개인 인감도장 날인)
- ㉧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 ㉨ **개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 ㉩ 소집통지서(총회 1주일 전까지 발송, 소집공고문 또는 전자우편 소집통지서 등)
- ㉪ 창립총회의 경우 주무관청의 설립승인서(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의 개선필요성

2.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지정의 문제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7조의3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의사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 소지가 없는 법인

추상적인 기준
주무관청 재량 ↑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의 개선필요성

2.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지정의 문제

- 지정 절차의 불명확성

- 지정 고시 기간의 부정기성

→ 지정 요건 충족 및 지정 여부에 대해 예측하기가 무척 어려움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 방안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 방안

1. 공증절차의 간소화

1) 공증서류 간소화

-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 활용 필요

Ex) 휴대전화 인증 등

2) 의결권 있는 회원 수 제한

Ex) 정회원/ 후원회원

개선안 중 대의원회 설치 관련

- 대의원회의 대표성 문제 발생 가능
- 대의원회로 총회를 대체할 수는 없음
- 의결권이 있는 회원(정회원)/ 없는 회원(후원회원) 으로 운영하는 경우 다수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 방안

2. 의사록인증제외 제도 개선

1)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지정 기준의 확립

- 객관적인 최소 기준 설정 필요

지정 기부금단체 추천 대상법인 요건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②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④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 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⑤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턴 3년이 경과할 것. *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 방안

2. 의사록인증제외 제도 대상 법인 기준 확립

1)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지정 기준의 확립

- 객관적인 최소 기준 설정 필요

발제문 中

- ㉠ 공익성 - 사업 목적, 사업 실적, 수혜 계층, 수혜 규모, 지속성
- ㉡ 투명성 - 예결산 공개, 수입·지출 공개, 경영 공시
- ㉢ 민주성 - 총회, 이사회 등 각종 회의 진행 등 정상적 운영여부,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보장 정도, 회원들의 참여도
- ㉣ 개방성 - 신규회원 가입 가능성, 탈퇴의 자유 여부
- ㉤ 건전성 - 자본금, 수입 등 재정 자립도, 내부 통제제도 유무(내외부 감사 유무, 감사보고서 유무), 상근 직원 유무, 상근 직원 숫자, 회원 수, 예산 규모, 설립연도

- **공익성:**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할 것(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3조 제2호 참조) - 정관 목적사업
- **투명성:**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할 것
- **민주성:** N년 동안 총회, 이사회 절차 관련 분쟁이 없었을 것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 방안

2. 의사록인증제외 제도 대상 법인 기준 확립

2) 지정 절차에 관한 자세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안내 필요

-발제문 中

- ② 정기적 지정고시제도: 지정고시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자인 단체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 ④ 지정 제외 여부 통지 제도: 지정고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면서 신청 법인에게 지정 여부에 대하여 서면 통지

-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설정과 함께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예) 서울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안내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78476>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 방안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안내

추천요청 방법

- 법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설립허가 받은 부서)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청
- 접수시기 :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초 (주무관청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추천하게 되므로 여유 기한 필요)
-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전까지 추천서(제출서류 포함)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 매분기별 추천기한(2018년기준) :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
 -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예외 불인정)

[내려받기] 19년개정-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

2019년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현황(2019.12.27) *매분기

지정기간

비영리법인은 요건을 갖추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설립허가 부서)에 추천을 요청하면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할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에게 기부; 위 [내려받기]를 참고하여 법인 허가부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 ※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 기부자 손비인정 (2011.1.1 이후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시 25%)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 방안

3.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의 폐지

- 주무관청 감독의 내실화 필요

- But 현재 감독기관 인력 등 부족

→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감사합니다

2020 비영리 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개선 토론회

(사)시민 · 서울시NPO지원센터 · (재)동천